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1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박충권 · 고동진
서천호 · 안철수 · 성일종
김정재 · 이현승 · 유상범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영·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, 병원성 미생물 검출,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·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영·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·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·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48조 등).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“영유아용식품”이란 영유아(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)의 성장
·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
품을 말한다.

1의3. “어린이용식품”이란 어린이(8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
한다)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식품을 말한다.

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
같이 한다.

다만,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정하여
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제조·가공·조리·소분·유통하는 영업자
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
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.

1. 영유아용식품
2. 어린이용식품

3.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

제95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48조제2항을 위반한 영유아용식품 또는 어린이용식품의 영업자

제97조제1호 중 “제48조제2항”을 “제48조제2항(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소를 확인·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(이하 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·가공·조리·소분·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.

③ ~ ⑭ (생략)
제9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~ 3의2. (생략)
<신설>

-----.

다만,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제조·가공·조리·소분·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.

1. 영유아용식품
2. 어린이용식품
3.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

③ ~ ⑭ (현행과 같음)
제95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3의3. 제48조제2항을 위반한 영유아용식품 또는 어린이용식품의 영업자

4.·5. (생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제9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9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2조의2제2항, 제17조제4항, 제31조제1항·제3항, 제37조제3항·제4항, 제39조제3항, <u>제48조제2항·제10항</u> ,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	1. ----- ----- ----- -- <u>제48조제2항(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</u> -----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